

**국방인공지능법안**  
(유용원의원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6355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유용원 · 부승찬 · 김소희  
조승환 · 김 건 · 김재섭  
이현승 · 윤영석 · 백혜련  
허 영 · 김예지 · 강선영  
우재준 · 성일종 · 박선원  
권칠승 · 소병훈 · 홍기원  
박홍배 · 김남근 · 윤종균  
문대림 · 정태호 · 최형두  
송석준 · 서범수 · 이만희  
고동진 · 안상훈 · 김성원  
박정훈 · 김미애 · 배현진  
의원 (33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전장환경 예측능력 제고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방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국방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와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 체계등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14조).

바. 국방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표준을 보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소요 결정 시부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방인공지능의 전력화 및 군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실증기반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카.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력 운용 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 국방인공지능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경쟁력의 혁신기반인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개발·도입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방력 증진과 국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3. “국방인공지능”이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및 국방정보시스템 등에 도입되거나 연계되어 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이란 국방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

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군사적인 목적의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5. “국방인공지능기술”이란 국방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6. “국방인공지능사업”이란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연구개발, 도입, 운용 또는 활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국방인공지능 정책은 국방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국가 안보 및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국방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추구하고,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분석·완화·관리하여야 한다.

1.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항
2.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3.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③ 국방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함에 있어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개입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방인공지능에 관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또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방인공지능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국방인공지능 추진체계

제5조(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기술 및 국방인공지능사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인공지능 발전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전략에 관한 사항
3. 국방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의 개발·운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방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책임성·안전성·신뢰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기술 진흥 및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방인공지능위원회) ①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및 국방력 강화와 국방인공지능사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병무청 차장
  3. 방위사업청 차장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5. 국방부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
  6. 한국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  
술진흥연구소장
  7. 국방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위촉하  
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  
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4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⑨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둔다.

⑬ 그 밖에 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기본방향에 기반한 국방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방 전략 및 작전 수행 개념에 부합하는 국방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국방 분야 적용에 저해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민간 인공지능기술 도입 등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방인공지능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9. 국방인공지능 관련 군사적 및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  
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국방인공지능 관련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국  
방인공지능 관련 특정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방인공지능 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국방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 협력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국방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3. 국방인공지능 관련 국제 협력 및 정보 교환, 국제 표준화 및 공동 연구 개발 사업 지원
4.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5. 국방인공지능기술의 군사적 목적 활용 확산에 따른 군사 작전 · 전략 · 정보 · 사이버안보 등 국방 전반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분석
  6. 국방인공지능기술 및 관련 산업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 군사적 목적 적용 가능성 및 위협 분석, 관련 법규 및 제도 연구
  7.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8.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국제 협력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국방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①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지

참 · 가이드라인의 제공

2. 국방인공지능의 안전 관련 위험 식별 · 분석 · 완화 · 관리 방안 연구
  3. 국방인공지능 안전인증 제도의 설계 및 운영
  4. 국방인공지능 안전 관련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 국방인공지능 시험평가 기준 개발 지원
  6. 국방인공지능 안전 관련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내 · 국제 협력 및 정보 교류
  7.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8. 그 밖에 국방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인공지능 안전 관련 사업
- ③ 국방부장관등은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전반의 안전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인공지능 안전 관련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방인공지능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초·원천 기술의 연구개발
  2. 국방인공지능 관련 기술표준의 제정 및 민간 표준과의 연계
  3. 국방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공동 개발
  4. 민간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 공유 및 국방 분야 이전 지원
  5.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 발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국방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특례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적용) ① 국방부장관등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이하 “무기체계등”이라 한다)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도입 및 운용하는 경우로서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방인공지능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등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방인공지능기술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① 국방부장관 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국방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국방인공지능 시스템의 상호운용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국방부장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국방인공지능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위하여 민간 부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방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안 등) ①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학습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품질 확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간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등은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무기체계등의 소요 결정 시 민간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여부가 체계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국방인공지능의 활용 촉진) ①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활용을 전 국방 분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국방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인공지능의 신속한 전력화 및 군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특례 및 관련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방인공지능 관련 제도 개선 등) ①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비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인공지능 관련 법률, 정책 및 기술 동향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국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①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민간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국방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①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및 시스템의 실증, 시험, 평가 및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 실증기반을 구축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등은 구축된 실증기반의 활용 현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국방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 ①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시험, 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국방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국방인공지능 안정성 확보

제23조(국방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① 국방부장관등은 신뢰할 수 있는 국방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국방인공지능 개발 및 운용 환경 조성
2. 국방인공지능의 활용이 국가 안보 및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 지원
4. 국방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국방인공지능 관련 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안전성 및 신뢰

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 제정 및 시행 지원

6. 국방인공지능 관련 단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국방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4조(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의무) ① 국방부장관등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인공지능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력 운용 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방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2. 국방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③ 안전연구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안전성 확보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등

은 국방인공지능 발전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편향 문제 및 오용·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시책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국방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국방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방인공지능 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용 현황, 인력 현황,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 작성을 위하여 국방 관련 기관, 각군, 방위사업청 및 관련 민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제29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른 국방인공지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제6조제9항과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분과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